

「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」 약관

제1조 약관의 적용

- ① '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'(이하 '이 저축'이라 한다) 거래는 이 약관 및
예금거래기본약관, 적립식예금약관을 적용합니다.
- ② 제1항의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주택도시기금법」, 「주택공급에 관한
규칙」, 「조세특례제한법」, 「소득세법」, 「국고금 관리법」,
「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」 및 주택도시기금포탈
(nhuf.molit.go.kr) 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안내페이지에 제공된 「청년
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이드라인」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. 고객 요청 시
「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이드라인」은 영업점 창구에서도 제공합니다.

제2조 가입대상

- ① 이 저축의 가입대상은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
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.
1. 다음 각목의 소득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.
 - 가. 직전년도의 소득세법 상 종합소득(이자소득,배당소득,연금소득은 제외)이 3천만원
이하이고 소득세 신고·납부 이행이 증빙된 고객. 단, 직전년도의 소득서류가
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가입하는 경우 전전년도의 소득을 인정합니다.
 - 나. 직전년도 또는 가입연도의 소득증빙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소득자로 소득기간이
표시된 경우 총수입금액을 연환산한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고객
 2. 다음 각목의 세대주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.
 - 가. 가입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(연속하여 3개월 이상 세대주)일 것
 - 나. 가입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로서,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주(연속하여
3개월 이상 세대주)가 될 예정일 것



다. 가입자가 무주택세대(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본인, 배
직계존·비속이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)의 세대원일 것

- ② 이 저축의 가입시점에 가입대상의 재직기간 및 재직여부 또는 사업 영위 여부는 별도로 확인하지 않습니다.
- ③ 이 저축의 가입은 청약저축, 청약예금, 청약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포함하여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에 한합니다.

제3조 납입기간

이 저축의 납입기간은 가입한 날부터 국민주택(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은 제외)과 민영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로 합니다.

제4조 월 납입금

이 저축의 월 납입금은 매월 약정 납입일에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합니다. 다만, 월 납입금의 총액이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에서 정한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의 최대 한도인 1,500만원에 이를 때까지는 5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.

제5조 이자 등

- ① 이 저축의 이자는 입금한 월 납입금에 대하여 입금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실제치일수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원금과 함께 지급합니다. 다만, 가입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.
- ② 이 저축은 만기가 없는 상품으로서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후이율은 적용하지 않습니다.

③ 제2조 ①항 2호 나목의 세대주 요건을 동 저축 해지 전까지 입증하지 아니한 경우 우대이율은 적용하지 않습니다.

제6조 지급시기

이 저축의 원금 및 이자는 가입자가 이 저축을 해지할 때 일시에 지급합니다.

제7조 전환신규

기존 '주택청약종합저축'을 보유한 고객이 제2조의 가입자격을 갖춘 경우 이 저축으로 전환신규가 가능하며, 기존 '주택청약종합저축'의 납입 인정된 횟수와 금액을 인정합니다.

제8조 계좌부활

이 저축을 사용하여 당첨자로 선정되어 해약한 자가 사업주체의 파산으로 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될 경우 등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에서 정한 부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, 이 저축이 아닌 기존 '주택청약종합저축'으로 부활할 수 있습니다.

제9조 소득공제

이 저축은 소득공제 가능한 상품으로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87조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제10조 양도 및 질권설정

이 저축은 양도하거나 제3자 담보제공을 위한 질권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.

제11조 기타

이 저축은 『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조제1항』이 정하는 바에 따라



『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』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.